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0가합5207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전수려

피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

담당변호사 김정기

변론 종결2022. 10. 26.

판결 선고2022.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와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 3. 5.자 매매계약을 301,850,693원 및 그 중 300,799,403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1. 25.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301,850,693원 및 그 중 300,799,40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2019. 11. 25.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구상채무에 대한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6. 7.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원금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6. 7. 29.부터 2017. 7. 28.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에 관해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D의 대표이사이던 C는 같은 날 위 보증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

제1조(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① 본인('D'를 말한다)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원금	금 이억구천칠백만원 정
신용보증기간	2016. 7. 29.부터 2017. 7. 28.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제3조(보증료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C'를 말한다)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원고는 2017. 7. 27.경, 2018. 7. 26.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종래 2017. 7. 28.까지에서 최종적으로 2019. 7. 26.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1) C는 2019. 3. 5.경 주식회사 A(이하 회생절차 개시로 피고로 수계되기 전의 위 회사를 지칭하여 'A'이라 한다)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하되 A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E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이하 각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2)

특약사항

- 본 계약은 근저당 설정된 목록 17 채무자 F 금 36,000,000원, 목록 18, 19 C 90,000,000원, 가압류 목록 141) C 해지하여야 한다.
- 다가구주택 공사후 다가구주택을 임대전까지 C, G가 은행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단 임대를 한 후 이자는 주식회사 캡처가 지급하기로 한다).
- 다가구주택 매각할 경우 이익금은 주식회사 캡처 50%, C 30%, G 20%를 배분하기로 함.
- 근저당설정 830,000,000원2) H은행 상계함.
- 공사 후 30일 이내 등기이전시 잔금을 지급한다.

① 연대보증인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19. 5. 14.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제1859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9. 9.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제34823호로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9. 7. 2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무의 이행기일인 2019. 7. 26. D의 대출채무 상환 지체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10. 11.경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원금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7.부터 같은 해 10. 10.까지의 지연이자 3,799,403원의 합계 300,799,403원을 지급하여 D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라. 원고의 D 및 C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는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2019차전13311호로 D 및 C를 상대로 원고의 대위변제금 300,799,403원 및 이 사건 보증계약 제3조 제3항의 위약금 1,051,290원 합계 301,850,693원을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10.경 D 및 C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A의 회생절차 개시

A은 2021. 10. 1.경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86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피고가 법률상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8호증의5, 6,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을라 제1, 5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에 관해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매매의 취소를 구한다.

가) 원고는 C에 대해 2019. 7. 26.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2019. 10. 11.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구상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D 및 C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로부터 4개월 내지 7개월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및 C의 사행의사가 인정된다.

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수익자인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A이 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1,302,623,600원의 절반에 그치는 67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점,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G는 A의 대표이사이던 J 및 D의 대표이사이던 C의 지인으로 D 등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 감정평가액은 1,304,546,42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E 근저당권에 더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K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K 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L 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M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 이후 위 각 근저당권이 각 피담보채무액 668,900,000원(E 근저당권), 18,500,000원(K 근저당권), 60,000,000원(L 근저당권), 37,500,000원(M 근저당권)의 변제로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보전채권 상당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C에 대한 각 구상권은 이 사건 매매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D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 당시 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구상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원고의 C에 대한 각 구상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해 채무자 C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가액은 C와 A의 실거래 금액, 인근 부동산의 낙찰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8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그 가치가 남지 않거나 거의 남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관한 감정인 N의 감정결과는 C와 A 사이의 거래 금액을 670,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00원이라고 잘못 전제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수 없는바, 이 사건 매매로 C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거나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A은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으로 채무자 C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때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용인세무서에 대한 이 법원의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9. 7. 26. 이 사건 보증사고로 인해 이 사건 보증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2019. 10. 11.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해 이 사건 보증계약 제1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원고의 사후구상권이 각 발생(이하 위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합하여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한 사실, D의 매출액이 2017년 1기 705,180,514원, 2017년 2기 643,979,566원, 2018년 1기 602,468,069원, 2018년 2기 521,332,478원, 2019년 1기 409,330,424원, 2019년 2기 34,086,538원(예정)으로 감소한 사실, D의 2021. 9. 13. 기준 체납 국세가 74,861,270원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용인세무서에 대한 이 법원의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이 크지 않고, 2019년 2기의 매출액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의 사정이며, 오히려 이익잉여금이 2017년 256,223,880원에서 2018년 456,114,873원으로 증가하고, 부채가 2017년 1,334,584,322원에서 2018년 649,318,766원으로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당기순이익은 2017년 105,302,458원에서 2018년 199,890,993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D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D의 2021. 9. 13. 기준 체납 국세가 74,861,27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 당시 체납된 국세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9. 1. 28. D와 경제적 공동체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I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D 및 C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D는 C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C 소유의 부동산에 위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D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I의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9. 2. 20. 가압류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기도 한 점, ④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사고의 사고 종류를 '원금 연체'로 하여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대위변제금으로 보증 범위 내의 대출원금 및 2019. 6. 27. 이후의 대출이자 내지 지연이자만을

지급받았는바, D는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일에 변제 의무가 도래한 2019. 7월분 이자를 제외한 2019. 6. 26.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모두 연체 없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18. 7. 26. 당초 2018. 7. 27.까지였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9. 7. 26.까지로 연장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 및 나머지 제출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가까운 장래에 D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사해행위 내지 사해의사의 성립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백현민

판사장동규

별지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압구 순위번호 13으로 I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의 표기는 '가압류 목록 13'의 오기로 보인다.

2) E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03,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